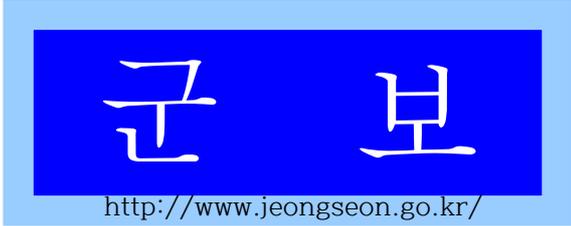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4호 2022. 9. 7.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118호 하천공사 준공고시[지방하천(지장천) 가수·광덕지구 정비사업].....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968호 정선군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8
- 정선군 공고 제2022-984호 대부업체 소재지확인 공시송달 공고.....35
- 정선군 공고 제2022-986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6
- 정선군 공고 제2022-987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3
- 정선군 공고 제2022-990호 제28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5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118호

하천공사 준공고시[지방하천(지장천) 가수·광덕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지장천) 가수·광덕지구 정비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일

정 선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지장하천(지장천) 가수·광덕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지장천 지방하천의 하천제방이 개수되지 않아 자연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하천을 개수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치수기능을 확보하면서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나. 사업량 : 축제 및 호안정비 L=1.93km

구 분	개 요
1) 축 제 공	흙쌓기 54,014m ³ , 흙갹기 55,910m ³ , 순성토 14,451m ³ , 사토 15,018m ³ , 법면보호공 5,667m ²
2) 호 안 공	전석쌓기 28,410m ²
3) 구조물공	배수통관 Φ800mm 4개소
4) 포 장 공	콘크리트포장 7,876m ²
5) 부 대 공	1식

-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남면 광덕리 일원
-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정선군수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5. 하천공사의 착공 및 준공일
 - 가. 착 공 일 : 2019년 12월
 - 나. 준 공 일 : 2021년 12월
-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외의 권리자 성명 및 주소
 - 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불입”
 -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정선군청 건
설과 (☎ 033-560-2493)
- 8.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 9.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사항 : 정선군청에서 유지관리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외의 권리자 성명 및 주소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95	전	862	3	국 (환경부)	국	-	-
2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95-1	전	83	83	정선군	공	-	-
3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92	천	1,154	393	정선군	공	-	-
4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91-1	전	1,010	1,010	강릉○씨군수공 파철자종자종친 회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63	-	-
5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산366	천	256,554	1,487	국 (건설교통부)	국	-	-
6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90	임	651	517	정선군	공	-	-
7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89-6	전	16	16	정선군	공	-	-
8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79-1	도	2,836	64	국(국토교통부)	국	-	-
9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8-5	전	5	5	정선군	공	-	-
10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5	전	376	376	정선군	공	-	-
11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6	전	1	1	정선군	공	-	-
12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7	전	65	65	정선군	공	-	-
13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4	전	879	48	정선군	공	-	-
14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산366	천	256,554	6,055	국(건설교통부)	국	-	-
15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3-2	답	245	14	정선군	공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6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3-3	답	78	78	강원도	공	-	-
17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3-1	도	2,361	2,352	국 (국토교통부)	국	-	-
18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4-5	답	645	645	국 (기획재정부)	국	-	-
19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4-4	답	190	190	국 (환경부)	국	-	-
20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8-1	답	645	645	강원도	공	-	-
21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1-1	답	449	454	강원도	공	-	-
22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2-1	답	428	428	강원도	공	-	-
23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5-1	답	330	330	강원도	공	-	-
24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6-1	답	135	135	강원도	공	-	-
25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9-1	답	201	201	강원도	공	-	-
26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1-6	답	1,068	1,068	강원도	공	-	-
27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1-4	답	177	177	정선군	공	-	-
28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2	답	185	185	정선군	공	-	-
29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2-2	답	559	227	정선군	공	-	-
30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1-5	답	57	14	정선군	공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1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3-8	전	3	3	정선군	공	-	-
32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3-5	도	659	207	정선군	공	-	-
33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5-1	천	16,7350	5,362	국 (건설부)	국	-	-
34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3-1	도	1,084	430	국 (국토교통부)	국	-	-
35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3-7	전	1,383	1,383	정선군	공	-	-
36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4-4	전	616	616	정선군	공	-	-
37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6-6	전	38	38	정선군	공	-	-
38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6-7	전	66	66	정선군	공	-	-
39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6-8	전	11	11	정선군	공	-	-
40	정선군 남면 광덕리	640-1	도	547	67	정선군	공	-	-
41	정선군 남면 광덕리	640-3	전	2	2	강원도	공	-	-
42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9-1	도	517	174	정선군	공	-	-
43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9-3	전	35	35	강원도	공	-	-
44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8-1	전	193	193	강원도	공	-	-
45	정선군 남면 광덕리	642-1	도	1816	166	국 (국토교통부)	국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6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7-1	전	95	95	강원도	공	-	-
47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5-1	천	167,350	1,999	국 (건설부)	국	-	-
48	정선군 남면 광덕리	628-1	전	87	87	강원도	공	-	-
49	정선군 남면 광덕리	629-3	전	76	76	강원도	공	-	-
50	정선군 남면 광덕리	629-2	목 장 용 지	1,064	1,061	강원도	공	-	-
51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2	전	1,740	958	정선군	공	-	-
52	정선군 남면 광덕리	632-1	전	113	113	정선군	공	-	-
53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7-1	임 야	33	33	정선군	공	-	-
54	정선군 남면 광덕리	624	도	1,253	99	정선군	공	-	-
55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4-2	도	688	681	정선군	공	-	-
56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4-3	전	412	412	정선군	공	-	-
57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3-5	전	1	1	강원도	공	-	-
58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5-1	천	167,350	11,079	국 (건설부)	국	-	-
59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3-3	전	121	121	강원도	공	-	-
60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3-2	도	194	194	정선군	공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61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2-2	전	83	83	강원도	공	-	-
62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2-1	도	98	98	정선군	공	-	-
63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3-4	전	77	77	강원도	공	-	-
64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3-1	도	65	65	정선군	공	-	-
65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1-1	도	26	26	정선군	공	-	-
66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1-3	전	254	254	정선군	공	-	-
67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1-4	전	19	19	정선군	공	-	-
68	정선군 남면 광덕리	651-2	도	1,063	400	정선군	공	-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968호

정선군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 개정('21. 12.)

2. 주요 개정내용

- 주민대피 관리기준 운영 매뉴얼 구체화
- 비탈면 성상에 따른 붕괴징후 판단기준 명확화
- 단계별 조정·해제 판단기준 및 상황전파 마련
- 강수량에 의한 주민대피 관리기준 개선
- 상시계측관리 결과에 의한 계측기기 관리기준 재설정

3. 전부개정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8.18. ~ 2022. 9. 6.(20일)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건설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건설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479), 팩스(033-560-2591)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예규 제 호

정선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 전부개정안

I 목적

- 본 지침은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상시계측관리 결과와 강수량·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 관리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II 법적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한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하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 법령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대피명령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명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대피 또는 퇴거

Ⅲ 주민대피 관리기준

① 주민대피계획 수립 개요

□ 주 체 : 정선군수

○ 붕괴위험지역 또는 계측관리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

□ 대피대상

○ 붕괴위험지역의 상시계측결과 및 기상예보·특보 시 비탈면 성상의 변화 등으로 붕괴가 예측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등

□ 대피시기 * 주민대피 관리기준 권고내역 참조(별표1)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의 관리기준 권고내역에 따라 주민대피 시기 등 기준 설정

□ 주민대피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상황관리 단계별 대피기준 및 대피 절차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별 대피대책

○ 대피 시 안전요원 배치현황 및 비상연락 체계도

○ GIS와 연계된 대피경로 및 단계별 대피장소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 생활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 대피 경로·장소 표지판 등 인식체계, 담당자별 주민대피 매뉴얼

○ 붕괴위험지역 강제대피를 위한 유관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계측기 및 시스템의 활용 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대피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② 비탈면 성상에 따른 붕괴징후 판단기준

□ 평상시 붕괴우려 징후

○ 비탈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용수)이 샘솟을 때

○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외부 영향 없이 갑자기 멈출 때

○ 갑자기 경사지 일부가 금(단차, 균열)이 가거나 내려앉을(침하) 때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거리거나 내려앉을 때
- 주위에서 ‘우웅’ 하는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던 지역에 물이 솟아나거나 포화되는 경우
- 지면·포장도로 또는 인도에 새로운 균열 발생 및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경우 (융기발생 시)
- 콘크리트 바닥이나 기초가 기울거나 균열이 가는 경우
- 전신주, 나무, 방음벽, 울타리, 옹벽, 석축 등이 기울어지는 경우
- 비가 계속 내리거나 그친 경우에도 계곡물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 평상시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울타리 뒷부분에 낙석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 비탈면에 암석의 틈이 발달하여 낙석의 가능성이 높거나 밧 뜬돌이 존재하는 경우
- 해빙기 시 암석의 틈이 벌어지거나 지반이 변형되는 경우
- 옹벽, 울타리,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등 구조물의 변형 또는파손이 발생한 경우
- 비탈면이 변형 또는 기울거나 땅이 밀리는 경우(땅밀림)

□ 비가 오는 중이거나 비가 그친 후 붕괴 징후

<암반 급경사지>

- 배출수의 지속적인 발생 또는 작은 암반 탈락이 빈번한 경우
- 낙석방지망 및 방호책 뒷부분에 낙석이 쌓여 있는 경우
- 암반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경우
- 집중호우 시 비탈면 상부로부터 빗물이 집수 되어 쏟아져 내리거나, 암반의 틈으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 경우

<토사로 구성된 급경사지>

- 급경사지 주변에 시공되어있는 배수구가 막혀 있는 경우
- 지속적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유실), 토사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 급경사지 하단부에 토사가 적체되거나 길 또는 도로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 되는 경우
- 강우 시 급경사지 내부에 물고랑(세굴)이 발생하여 심하게 토사가 흘러내리는(유실) 경우
- 강우 시 비탈면이 기울거나 움직이는 경우
- 강우 시 비탈면 상부로부터 빗물이 집수 되어 쏟아져 내리는 경우
- 비탈면 좌우 계곡부에서 다량의 우수 배출 또는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토석류)올 수 있는 경우

<옹벽 및 축대>

- 통상 비가 오더라도 혼탁해진 적이 없는 배수구의 물이 갑자기 혼탁해지거나 배수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
- 옹벽이나 축대 배면의 토압이 증가하거나 기초지반의 변형이 발생하여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발생한 경우
- 평소 작은 균열이 커지면서 단차가 발생하는 것은 붕괴가 발생하는 조짐
 - ※ 옹벽·축대의 일정 구간에 배부름 현상 및 상부가 전면으로 돌출된 것은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

③ 단계별 주민대피 관리기준 운영 매뉴얼

□ 관심단계

- 대피소 지정, 유관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전파
-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등 예찰활동 지속 추진
- 계측 DB 이력 관리, 계측장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 정기점검 및 보수 추진
 - ※ 계측기 DB분석, 계측기기 및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대피소, 대피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주민대피 관련 보고체계 및 주요 조치내용 사전 숙지
- 붕괴징후 시 주민대피 요령 등 사전 홍보 및 교육
 - 대피소, 대피정보 전달체계 확립(마을 이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민의 강제적 행정조치 사전 홍보 등
- 급경사지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사전 확보
- 기상청 등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정보 확인

□ 주의단계

- 급경사지의 계측DB 관리 및 CCTV 관찰 빈도 증가,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순찰 강화
 - 계측DB 변위 징후 포착 시 계측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상황보고, 필요한 경우 현장 긴급 조사 실시
- 기상정보(강우량·기상특보 등) 파악 및 전파
-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민간모니터위원 등 비상연락망 가동
- 급경사지 붕괴 인접지역 거동 불편자 사전 이동조치
- 예·경보시설 등 긴급점검 및 보수 실시
 -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등 각종 예·경보시설의 작동상태 점검 및 시스템과 연계된 앰프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정비
 - ※ 예·경보시설의 긴급점검 및 보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

□ 경계단계(경보)

-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위기경보 발령
- 담당자는 CCTV 확인, 현장 긴급조사 실시, 전문기관 지원 등을 통해 계측 및 강우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논의

- 상황판단회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보단계 발령 여부 결 정
-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경계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각단계 추진

2)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급경사지 재난상황 접수 및 상황 확인
- 재난상황 접수 시 유관기관 통보

3) 사전대비 강화

◇ 현장순찰 강화, 비상근무 실시, 대상지구 주민에게 대피준비 통보 및 안내요원, 대 피담당자, 지역자율방재단 등 임무 수행 사전교육 실시
 -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앰프, 전화, 이동차량, 방송, FAX 등 모든 수단 활용



안내요원, 대피담당자,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은 수신여부 확인

- 안내요원, 지역자율방재단 등 대피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자신의 역할 교육 및 현 장 파견 실시
- 붕괴위험지역 대피 대상자 수요 사전 파악
- 대피소 개방과 대피소 기본시설 설치 및 부족 물품 보완, 비상인력 대기(정전과 야간 대피를 위한 물품 등 확인)
 - 업무담당자는 물품 부족 등 필요시 즉시 지원 요청
- 대피로 상태점검 및 긴급보수 등 실시
 - 대피소, 대피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확인
 - ※ 긴급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민간사업체와 연락체계 구축
- 개인별 손전등, 비상물품 등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 CBS 문자방송, 지역방송 등 홍보 방송 실시
- 대피 주민수, 주민특성(재해약자 등), 위급환자 위치 사전파악 등
 - 위급환자가 자력 대피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피담당자 별도 지정

- 해당 지역 주민에게 준비사항 등 긴급 안내
 - 대피지도를 긴급 배포하거나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
 - 대피 시 이웃주민 대피 여부도 확인하도록 안내
 - 이·통장이 대피장소, 대피로 및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 경찰, 군부대, 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등 긴급대피 관련 유관기관 역할 재점검 및 인력·장비 비상대기 협조 요청

□ 심각단계(대피)

- 피해의 위험을 알리고 주민대피 실시(필요시 대피명령)
 - 자동문자·음성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앰프, 전화, 라디오,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 안전대피로 확보, 대피로 장애물 제거, 대피경로 유도, 대피 수단 제공, 교통통제 등 지원
 - 경고관·통제선(Safety Line) 설치
- 경찰, 소방서, 군부대, 보건소,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에 주민 대피 긴급 지원 요청
 - 유관기관은 사전계획에 따라 주민대피, 대피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등 긴급 지원
- 대피물자, 인력, 장비 등 신속히 지원
 - 현지요청 또는 상황판단에 따라 필요한 물자·인력·장비 신속 지원
- 안내요원, 대피담당자 등의 수신 여부는 반드시 재확인 필요
 - 안내요원, 대피담당자 및 대피 관련 각 업무담당자는 임무에 따른 역할 수행으로 주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함
- 대피완료 후 대피상황을 NDMS에 입력·보고
 - 대피지구명, 대피 장소 및 인원, 피해현황, 완료시각 등
 - 피해내역 파악 및 긴급지원 대책 파악
- 붕괴발생 시 원인조사 실시, 긴급조치 및 대책 수립

④ 단계별 조정·해제 판단기준 및 상황전파

○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위기경보 조정·해제 결정

- 위기경보 단계별 계측기기 오류 또는 피해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 이후에는 조정 또는 해제

<단계별 조정·해제 기준>

구 분	조 건	조정 및 해제 기준
주 의	• 주의 발령 후 계측값이 주의단계 계측 기준값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관심단계로 조정
경 계	• 경계 발령 후 계측값이 경계단계 계측 기준값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전문기관 현장확인 및 상황판단회의 후 주의단계로 조정 검토
심 각	• 심각 발령 후 계측값이 심각단계 계측 기준값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전문기관 현장확인 및 상황판단회의 후 대피명령 해제 및 경계단계로 조정 검토
기 타	• 피해(붕괴) 발생 후	• 안전조치 및 전문기관 현장확인 후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관리단계 결정
	• 계측값 오류	• 전문기관 계측기기 및 관련 시스템 점검 후 관리단계 조정 검토
	• 계측값이 단계별 계측 기준값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나, 급경사지에 이상징후가 없는 경우	• 전문기관 급경사지 정밀 조사, 계측기기 및 관련 시스템 점검 후 관리단계 조정 검토

○ 위기경보 조정·해제에 따른 조치결과 등 상황전파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에 위기경보 발령 수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위기경보 단계 조정·해제 결과 전파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대피 관리기준 권고내역

①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수량에 의한 주민대피 관리기준

- 급경사지 등 피해지역 강우 및 5개 권역별 지질특성 분석
 - 피해지역 강우(1999~2020년)를 분석하여 5개 권역을 지질별(화성암, 변성암, 퇴적암)로 구분하고 위기단계에 따라 기준강수량 산정(1시간, 1일, 2일)
- 전국 시군구 산림면적에 따른 지질(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비율 산정
 - 산림 입지환경을 지형, 모암, 경사 등 인자별로 분류하여 구축한 산림입지도*의 시군구 지질 비율 활용
 - * 비탈면 성상을 고려하기 위해 도심, 논밭 등의 지질 제외
- 정선군 강수량 기준 산정
 - 5개 권역에 대한 지질별 기준강수량과 시군구 산림 면적에 따른 지질 비율을 곱한 후 각각의 값 합산

<강원권 지질별 강우기준(1시간)>

(단위 : mm)

강우지속시간	지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시간	화성암	20	23	28	38
	변성암	18	21	27	36
	퇴적암	17	17	23	30

<급경사지 붕괴 예·경보를 위한 강수량 기준(정선군)>

(단위 : mm)

행정구역		단계	주민대피 강우기준		
			1시간	1일	2일
강원도	정선군	관심	9	31	51
		주의	13	44	74
		경계	24	77	116
		심각	32	106	172

◆ 위기단계별 사전 발령 적용방법(예시)



◇ 강원도 정선군

○ (1일 차) 현재 강수량 0, 일기예보 예상 강수량 50~100mm

- 예보 최대강수량이 100mm로 24시간 주의보 기준 강수량 44보다 많고 경계(경보) 기준인 101 보다 적으므로 주의단계 발령 가능

○ (2일 차) 24시간 실제 누적강수량 80mm, 일기예보 예상 강수량 50~100mm

- 실제 누적강수량 80mm와 예보 최대강수량 100mm 합이 180mm로 48시간 경계(경보) 기준 강수량인 116 다 많으므로 심각단계 발령 가능

○ (3일 차) 실제 강수량 50mm 발생

- 실제 누적강수량 130mm(2일 차 누적강수량 80mm+3일 차 실제 강수량 50mm)로 심각(경보) 기준인 172 다 적으므로 경계단계 발령 가능

② 상시계측관리 결과에 의한 주민대피 관리기준

- ‘상시계측관리’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 및 붕괴 등으로 위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계측(計測) 및 자료관리를 말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비탈면 붕괴 현장 및 실증실험 계측 데이터 분석 결과와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등 참고하여 지표변위, 경사(지표·지중), 간극수압, 함수비, 하중, 지하수위, 모관흡수력 등 8종의 계측기기 기반 권고기준 설정

① 지표변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지표변위는 일반적인 비탈면의 붕괴 형태인 다항형(Polynomial) 기반의 변위속도를 기준으로 단기기준과 장기기준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변위 관찰을 위한 기존의 누적변위 기준도 함께 제시
 - (단기기준) 시공 중 또는 집중강우 등 긴급한 계측관리가 요구되는 비탈면
 - (장기기준) 지질구조 등에 의해 장기적인 계측관리가 요구되는 비탈면
- ※ 본 계측기준은 토사 비탈면의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되어 암반, 복합(암반+토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변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권고기준>

관리단계	경광등	단기기준	장기기준	
		변위속도(mm/min)	변위속도(mm/day)	누적변위(mm)
관 심	파랑	< 1	1	14
주 의	노랑	1	2	36
경 계	주황	4	8	90
심 각	적색	21	56	209

② 경사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경사계는 계측기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관리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설치 위치에 따라 지표경사계와 지중경사계로 구분
 - (지표경사계) 지표변위계의 계측관리기준과 동일하게 다항형을 기반으로 각속도를 계측관리기준로 설정, 단기기준에 적용되는 지표변위계의 대안으로 적용 가능

<지표경사계에 따른 주민대피 권고기준>

관리단계	경광등	각속도(° /min)
관 심	파랑	< 0.04
주 의	노랑	0.04
경 계	주황	0.22
심 각	적색	1.74

- (지중경사계) 일본 사면안정소위원회의 관리기준 및 국토교통성 지반경사계 산사태 판정기준, 국내 급경사지 경사계 관리기준 등을 종합·분석하여 선정

<지중경사계에 따른 주민대피 권고기준>

관리단계	경광등	누적 각변위(°)	각속도(° /day)
관 심	파랑	0.3(≒0.5%H)	0.05
주 의	노랑	0.6(≒1%H)	0.1
경 계	주황	0.9(≒2%H)	0.3
심 각	적색	1.7(≒3%H)	0.5

※ 관리기준에서 제시된 1%H는 약 0.57° 수준의 각도 변화 발생량

③ 간극수압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급경사지 계측관리 시 간극수압계에 대한 관리단계별 기준은 간극수압이 급경사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선정

- 과잉간극수압이란 간극수압계의 계측값(수두)에서 정수압(정수두)을 제외한 값을 의미함

<간극수압계에 따른 주민대피 권고기준>

관리단계	경광등	계측기준
관 심	파랑	-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주 의	노랑	- 과잉간극수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두의 차이가 지표면에서 지하수위 깊이의 50% 이상 발생할 경우
경 계	주황	- 과잉간극수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두의 차이가 지표면에서 지하수위 깊이의 80% 이상 발생할 경우
심 각	적색	- 과잉간극수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두의 차이가 지표면에서 지하수위 깊이의 100% 이상 발생할 경우

④ 함수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함수비는 지반 속 물의 함유 상태변화를 말하며 중량함수비와 체적함수비로 구분
- 본 기준의 함수비는 체적함수비 기준으로 제시
 - 함수비의 경우 건기 시 일정값을 유지하다가 강우침투로 인해 함수비 값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붕괴가 발생
 - 이를 이용하여 초기(건기) 함수비 기준으로 그 증가량을 계측관리 기준값으로 설정

▷ 함수비 증가량 = (현재)함수비 계측값 - 건기시 평균 함수비 계측값*
 * 건기시 평균 함수비 계측값이 없는 경우 15~25% 범위에서 결정
 (현장 자연함수비 모니터링 결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함수비계에 따른 주민대피 권고기준>

관리단계	경광등	함수비 증가량(%)	비 고
관 심	파랑	< 7.5	○ 설치 위치 - 토층 심도 최소 1.0m 혹은 토층 두께의 1/2 이상 - 기반암인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기반암에 인접하게 설치
주 의	노랑	7.5	
경 계	주황	10.0	
심 각	적색	20.0	

⑤ 하중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하중계는 구조적 대책인 보강공법과 비구조적 대책인 계측공법이 결합된 형태로 초기축력기준 증·감을 측정하여 이상 징후 파악
- 급경사지에 대한 하중계 관리기준은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서 제안한 흙막이 가시설의 하중계 관리기준과 현장적용 하중계의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선정

<하중계에 따른 주민대피 권고기준>

관리단계	경광등	계측값	비 고
관 심	파랑	± 5%	초기축력기준
주 의	노랑	± 10%	
경 계	주황	± 20%	
심 각	적색	± 30%	

⑥ 지하수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지하수위계를 이용한 계측공법은 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측정하여 급경사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지하수위계의 관리기준은 지하수위 관리기준과 흙막이 가시설 현장의 지하수위계 관리기준 적용사례를 참고하여 선정

<지하수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관리단계	경광등	계측값	비 고
관 심	파랑	$H \leq 0.3m$	H=1일 수위 변화량
주 의	노랑	$0.3m < H \leq 0.5m$	
경 계	주황	$0.5m < H \leq 1.0m$	
심 각	적색	$1.0m < H$	

< 참고(모관흡수력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 모관흡수력은 강우침투 동안 토층에서 발생하는 특성 중 하나로 급경사지 붕괴를 예측하기 위해 모관흡수력을 고려한 계측관리기준 필요
- 사면 안전율 변화특성을 검토하여 사면의 붕괴 유무를 사전 파악 가능
 - 불포화토 이론을 적용하여 모관흡수력, 흡입응력을 고려한 안전율 산정식과 임계값 산정식을 유도하여 안전율 기반의 계측관리기준 제시
 - 안전율(F.S=1)을 기준으로 붕괴예측이 가능하나 산정방법이 까다롭고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제시된 관리기준치는 참고지표로 활용할 것을 권고
- ※ 관리단계는 안전율(F.S) 기준으로 경계(F.S=1.2), 심각(F.S=1.0)으로 설정

<모관흡수력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구 분	안전율		흡입응력(kPa)	
	경계	심각	경계	심각
기 준	1.2	1.0	-7.3	-3.9

◆ 상시계측관리 결과에 따른 관리기준 적용 방법

- 계측항목 중 이상 징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를 직접지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를 간접지표로 설정
- 다양한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수행할 경우, 각 계측기의 계측결과를 활용한 관리단계별 주민대피 관리기준 설정 방안 제시

구 분	계측기 종류	주민대피 관리기준 적용 방법
직접지표	지표변위계	- 간접지표 발령 없이 직접지표의 계측기에서 이상 징후가 측정될 경우 CCTV 확인(단, 선행강우 및 간접지표 발령이 있을 경우 직접지표의 경보 발령)
	경사계 (지표·지중)	- 직접지표 계측기 두개 이상에서 이상 징후가 측정될 경우 단계별 경보 발령
	하중계	- 간접지표와 직접지표에서 하나 이상의 이상 징후가 측정될 경우 직접지표의 관리단계에 따라 경보 발령
간접지표	간극수압계	- 직접지표 발령 없이 간접지표 중 하나의 계측항목만 이상 징후가 측정될 경우, CCTV 확인 - 직접지표 발령 없이 간접지표에서 두개 이상의 계측기에서 이상 징후 측정될 경우 간접지표 관리단계에 따라 경보 발령
	함수비계	
	지하수위계	
	모관흡수력계	
CCTV		- CCTV로 이상 징후를 확인할 경우 경보 발령(관리자 판단에 따라 심각단계 발령 가능)

[별표 2] 주민대피에 따른 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 업무

① 업무담당자

① 관심·주의·경계단계

구 분	주 요 임 무
총괄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 준비 통보(가능한 모든 예·경보 시스템 활용) • 대피담당자에게 대비단계 임무 수행 지시 • 주민대피시기 판단을 위하여 현장상황 수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상황 파악은 대피담당자 또는 대책본부 상황보고 시스템 활용 - 대피담당자의 고유 임무(주민대피)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상황 보고 요구 자제 - 업무총괄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책본부에서 총괄 업무 수행 (현장 출장 자제) •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 등을 위하여 필요시 대피명령 공문서 작성을 완료하고 결재 대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
안내요원 (공무원, 민간인, 지역자율방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지구에 안내요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1명 선정, 현장을 총괄하도록 함 (현장총괄담당자) • 담당지구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현장상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대피 방해요인 유무 확인 및 위험요소 수시 점검 • 대피담당자는 담당 지역 주민대피를 최우선으로 추진 • 전화·방문 등을 통한 담당지구 주민의 현황 파악 • 앰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피 준비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소, 대피로, 대피준비물, 행동요령 등 사전 전파 - 대피 준비물은 대피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상시 대피소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물품을 대피지도, 대피수첩 등에 표시하거나 미리 통보 • 해당 지역 주민대피와 관련된 특이사항 파악·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를 위하여 인력·차량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기타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악 및 지원요청 등 - 필요시 경찰, 소방서, 병원 등에 지원 요청 • 대피로 점검 및 대피소 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로의 파손 여부 및 차량 이동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대피소 기본시설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지원요청 • 재해약자 담당자·총괄 담당자와 지속적인 정보교환 • 기타 담당지역의 대피 관련 전반적인 사항 파악·보고 등

구 분	주 요 임 무
대피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약자의 상태 확인 및 대피 준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대피수단의 유무, 자력 대피 가능 여부(가족 등), 대피준비물 확보 상태 등 - 필요시 차량, 생활필수품 준비 등 대피 준비 지원 • 대피장소, 대피소 등 사전확인 • 안내요원에게 상황 전달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황관리의 대비단계(사전준비)부분 업무 수행
대피자 (해당지역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준비물, 대피안내도·대피수첩 준비, 가족의 위치·상태 확인, 대피소 위치 확인, 차량 등 대피수단 확인 - 외출한 가족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을 취하고, 연락 불가시 대피장소, 연락처 등을 표시한 메모지 부착 • 지구 밖의 안전한 장소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대피사실 알림 • 가능하면 이웃과 행동을 같이하여 상호지원을 통한 안전도모 • 문 단속, 전기, 가스 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대피 시에는 누전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 차단

② 심각단계

구 분	주 요 임 무
총괄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지시 : 예·경보시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지시는 가능한 모든 예·경보시설 활용 - 1차 지시 후 안내요원, 대피담당자에게는 재차 발송 및 확인 필요 •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 등을 위하여 필요시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소방서·경찰에 협조 요청 • 안내요원·대피담당자 등과 지속적인 연락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실시간 파악 • 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책본부에서 총괄 업무 수행 (현장 출장 자제) • 경찰에 대피차량 유도 및 대피지구 치안유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지구 차량유도 및 치안유지는 유관기관인 경찰과 평상시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상황계획서에 따라 NDMS에 입력·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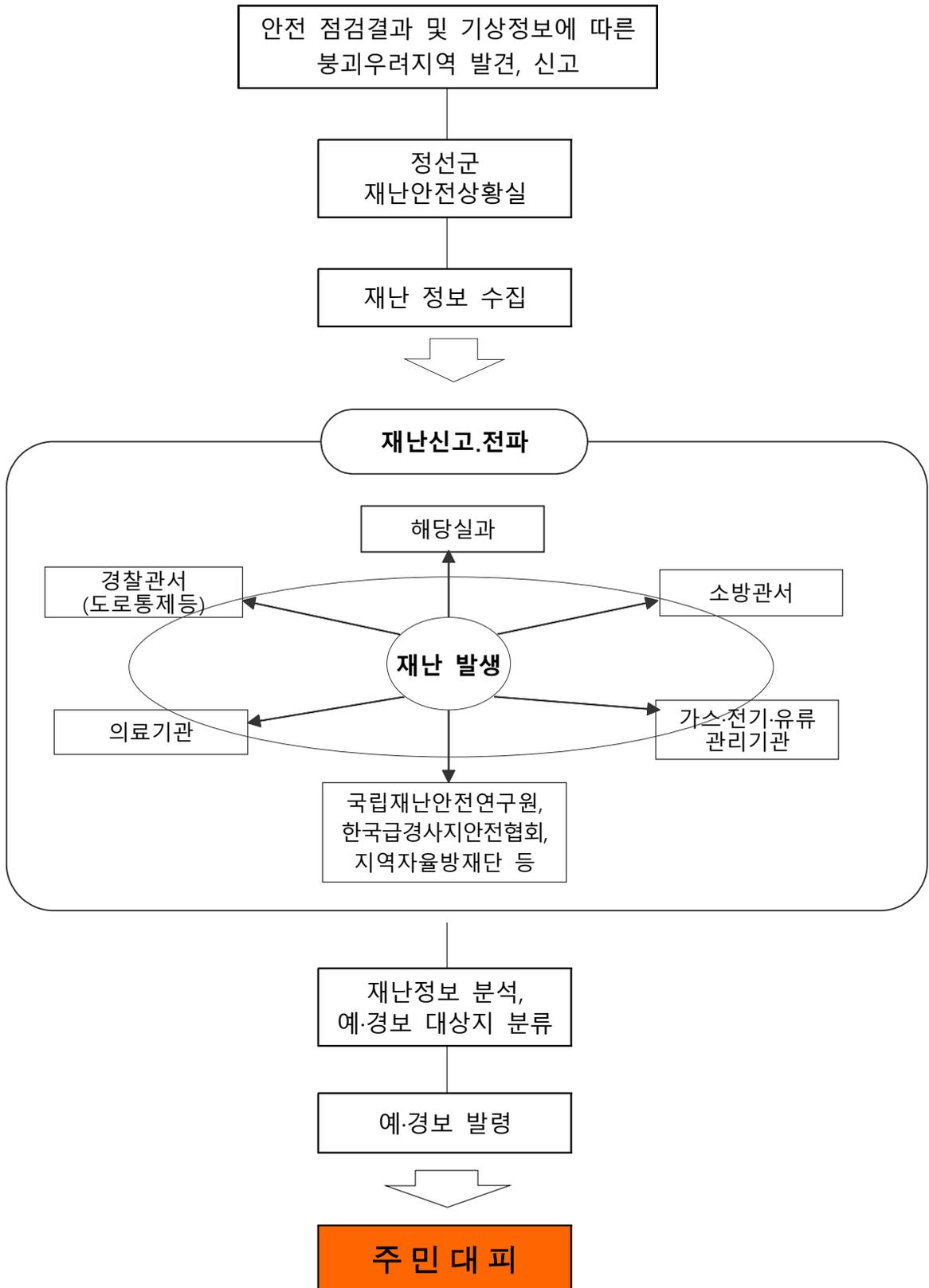
구 분	주 요 임 무
<p>안내요원 (공무원, 민간인, 지역자율방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지시 확인 즉시 담당지구 주민대피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주민대피 안내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주민대피 여부 확인 - 대피소, 안전한 대피로,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안내 -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대피 후 또는 대피 과정 중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적극 만류 - 대피 불응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소방 등에 협조 요청하여 강제 대피 - 위급환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 경찰, 병원 등에 협조 요청 - 주민대피 후 치안 필요시 경찰에 협조 요청 - 안내요원은 담당지구에 대한 수첩을 항상 휴대 •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 전에 대피담당자에게 재해약자 대피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p>안내요원 (공무원, 민간인, 지역자율방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수단 : 전화,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 <대피보고 - 총괄담당자에게 보고> - 보고시기 : 대피지시를 받은 직후 또는 대피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보고 <시작보고 - 현장총괄 담당자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 - 보고시기 : 주민에게 대피안내 방송 직후 - 보고내용 : 대피시작 시각 및 현지 상황, 지원요청 등 <완료보고 - 현장총괄 담당자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 - 보고시기 : 주민 대피 완료 확인 직후 - 보고내용 : 완료시각, 대피장소 등 개략적인 내용 <세부보고 - 현장총괄 담당자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 - 보고시기 : 지구별 대피인원 파악 후 - 보고내용 : 대피소별 인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안내요원 중 현장총괄 담당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른 안내요원은 현장총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p>대피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할 재해약자를 지정된 대피방법으로 지정된 대피장소로 최우선 대피 • 재해약자 대피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병원이나 119, 경찰 등에 지원요청(사후보고) •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수단 : 전화,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 <대피보고 - 총괄담당자에게 보고> - 보고시기 : 대피지시를 받은 직후 또는 대피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보고 - 보고내용 : 대피지시 내용 및 담당 재해약자 등 <완료보고 - 현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 - 보고시기 : 재해약자 대피완료 직후 안내요원에게 보고 - 보고내용 : 완료시각, 대피장소, 이름, 현 상황, 지원사항 등 • 재해약자 대피 완료 후 안내요원을 도와주고 안내요원과 같이 최종 철수

② 유관기관

구 분	주 요 임 무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 560-5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 유지 •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 사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e Line 설치, 교통통제 - 도로 교통통제 지원 및 우회도로 지정(필요시) - 사상자 신원 확인 - 응급복구 장비 지원 요청 - 사상자 후송을 위한 통행로 확보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 560-6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발생 시 구조·구급(119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현황 확인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 - 사상자 후송을 위한 통행로 확보 - 사상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확보, 이송 조치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신원 파악 및 가족과의 연락 등
지역자율방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 출입통제를 위해 Safety Line 설치 및 경찰 지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560-7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치료 및 사망자 장례절차 협조
한국전력 정선지사 560-3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제8087부대 2대대 553-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KT 정선점 560-3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및 주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측정보, 강우정보 분석 및 계측 DB 이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측정보 분석 시 진행성 변위 등 위험징후 포착한 경우, 경계 단계 발령 사전에 관리기관에 안내 -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예·경보시설(문자, 확성기, 전광판 등) 정기 점검 및 보수 지원 • 경계 및 심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측정보 및 강우정보 정밀분석 후 상황판단회의 지원 - 필요시 현장 긴급조사 실시 • 피해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조사 실시, 긴급조치 및 항구대책 방안 제안

※ 유관기관 등과 사전에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대처

[별표 3] 주민대피 상황전파 체계도



[별표 4] 주민대피 장소 현황

구분	위 치	시설명	면적(m ²)	수용(명)	대표전화
1	정선읍 동강로 2582	굴암경로당	130	50	562-1833
2	정선읍 남덕안길 1-7	덕송1리 경로당	60	23	562-8543
3	정선읍 백오담길 11	덕우리경로당	105	40	562-2325
4	정선읍 와평1길 6	신월1리경로당	123	47	563-1729
5	정선읍 병목길 16	애산1리 경로당	90	34	560-2314
6	정선읍 송오다래길 332-2	애산4리 경로당	90	34	-
7	정선읍 여탄길 182	여탄리경로당	105	40	562-8304
8	정선읍 월통길 7-12	월통 경로당	100	38	563-9996
9	정선읍 다래들안길 55	회동1리경로당	98	37	563-1109
10	정선읍 회동다리길 22	회동2리 경로당	150	57	562-0151
11	정선읍 벽탄길 32	벽탄초등학교	321	123	562-8216
12	정선읍 녹송7길 1	봉양초등학교	724	278	562-8464
13	정선읍 용담샅길 2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1,004	386	562-3642
14	정선읍 비봉로 15	정선초등학교	4,587	1,764	563-0010
15	고한읍 고한9길 28	고한천주교	594	228	591-1271
16	고한읍 고한로 300	갈래초등학교	5,186	1,994	591-2530
17	고한읍 고한9길 160	고한고등학교	1,899	730	592-3350
18	고한읍 고한4길 11	고한초등학교	6,471	2,488	592-0773
19	사북읍 소금강로 3589	사북1리 경로당	80	30	592-0559
20	사북읍 사북6길 12-6	사북청소년장학센터	2,500	961	592-1310
21	사북읍 소금강로 3640	사북중고등학교	3,300	1,269	590-0114
22	사북읍 소금강로 3561	사북초등학교	869	334	591-9939
23	신동읍 의림로 327	예미초등학교	2062	793	378-0048
24	신동읍 조동6길 17-12	함백초등학교	1163	447	378-1023
25	남면 무릉4로 35-10	증산천주교회	186	71	560-2314
26	남면 칠현로 70	남선초등학교	1,626	625	591-1005
27	남면 민동산로 12	증산초등학교	3,824	1,158	591-1068
28	북평면 명주내길 41	나전1리 경로당	95	1	563-2564
29	북평면 진드루길 52-10	나전2리 경로당	95	36	563-1251

구분	위 치	시설명	면적(㎡)	수용(명)	대표전화
30	북평면 움모태이길 7	남평1리 경로당	80	30	562-0391
31	북평면 갈번지길 20	남평2리 경로당	130	49	562-1733
32	북평면 넘말길 8	문곡리 경로당	80	30	562-0398
33	북평면 북평3길 56	북평1리 경로당	80	30	562-2440
34	북평면 탑골길 61	북평5리 경로당	85	32	562-0032
35	북평면 북평6길 14-6	북평6리 경로당	95	36	562-3259
36	북평면 오대천로 676	숙암리 경로당	122	46	562-2281
37	북평면 가평길 81-6	장열2리 경로당	80	30	562-7102
38	북평면 송석길 137	남평초등학교	1104	424	562-3007
39	북평면 서동로 2170	북평초등학교	803	308	560-2314
40	임계면 미락동길 117-7	낙천2리 경로당	110	42	562-0315
41	임계면 반천고양로 794	반천1리 경로당	95	36	562-9762
42	임계면 서동로 4584	송계리 경로당	30	11	562-0301
43	임계면 눈꽃마을길 158	직원1리 경로당	80	30	562-3022
44	임계면 서동로 4584	임계면종합복지회관	1335	513	560-2314
45	임계면 백두대간로 1313	임계중고등학교	2465	948	562-6028
46	임계면 송계1길 7	임계초등학교	826	317	562-6017
47	화암면 한치길 20	몰운1리 경로당	71	27	562-8825
48	화암면 몰운본동길 10	몰운2리 경로당	80	30	562-6463
49	화암면 북동로 522-5	북동리 경로당	151	58	562-9476
50	화암면 역실길 30	석곡1리 경로당	163	62	562-3334
51	화암면 돌목길 8	석곡2리 경로당	70	26	562-0335
52	화암면 풍촌1길 12-8	호촌 경로당	132	50	562-2188
53	화암면 소금강로 1020	화암2리 경로당	98	37	563-2066
54	화암면 대지산길 22	백전초등학교	1048	403	591-8047
55	화암면 그림바위길 66-20	화동초등학교	1682	646	562-2037
56	여량면 노추산로 759	구절리 경로당	90	34	562-5186
57	여량면 봉정안길 194	봉정리 경로당	105	40	563-6570
58	여량면 여량8길 26	여량4리 경로당	33	12	563-2439
59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208	80	560-2664
60	여량면 서동로 2950	여량초등학교	2948	1133	562-6329

관계법령 발췌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대피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984호

대부업체 소재지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정 선 군 수

-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 2. 공고기간 : 2022.08.24. ~ 2022.09.22.(30일간)

3. 대 상 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1	오투기전당사대부	김*우	강원정선2018-대부8	2018-7-1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1길 54

4.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등록취소
- 처분사유 : 대부업체의 소재불명

5. 공시송달내용

상기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등록이 제한됩니다.

6. 기타사항

본 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경제과(033-560-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2-986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가. 정선군 출자·출연기관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목적)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일부개정
 - ‘정선군의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 내용 추가
- 나. 안 제4조(재단의 사업) 일부개정 - 제6호 ~ 제10호 신설 및 제11호 내용 수정
 - 제6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
 - 제7호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
 - 제8호 문화행사 기획·운영·공연 지원사업
 - 제9호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
 - 제10호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
 - 제11호 종전의 “기타”를 “그 밖에 정선군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 및”으로 한다.

3. 관계법령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8. 25. ~ 2022. 9. 1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548,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인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제고를” 을 “정선군의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을” 로 한다.

제4조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정선군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 및” 으로 한다.

- 6.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
- 7.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
- 8. 문화행사 기획·운영·공연 지원사업
- 9.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
- 10.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인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정선군의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을 -----</u> ----- -----.</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제4조(재단의 사업) ----- -----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신설></p>	<p>6. <u>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u></p>
<p><신설></p>	<p>7. <u>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u></p>
<p><신설></p>	<p>8. <u>문화행사 기획·운영·공연 지원사업</u></p>
<p><신설></p>	<p>9. <u>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u></p>
<p><신설></p>	<p>10. <u>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u></p>
<p>6. 기타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p>	<p>11. <u>그 밖에 정선군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 및 -----</u> -----</p>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

4.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안석균

정선군 공고 제2022-987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가. 생활문화센터(고한 복합문화센터) 추가 구성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명칭과 위치) 별표 1 일부개정 - 고한 복합문화센터 추가
나. 안 제8조(사용료 등) 별표 2 일부개정 - 고한 복합문화센터 추가

3. 관계법령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8. 25. ~ 2022. 9. 1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548,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아리샘터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1-8	
신동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65	
북평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북평면 북평3길 73	
임계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고한 복합문화센터	정선군 고한읍 고한9길 81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사용시설		금 액	비 고
	기본시설	부대시설		
아리샘터	전시실		20,000	사용기준(1일) : 오전 10:00 ~ 18:00
	다목적실		10,000	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연습실1		10,000	
	연습실2		5,000	
		녹음실	10,000	
신동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연습실			
	회의실			
북평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연습실			
임계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	연습실		무료	개인·댄스·밴드·두드림연습실
	컴퓨터실			IT교육실, 미디어실
	마주침공간			
	독서실			
	동아리방			
	공작실			
		VR체험방		
		노래방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관계법령

□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④ 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

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

4.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안석균

정선군 공고 제2022-990호

제28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28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정 선 군 수

- 01.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02.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3.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4.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5.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6.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07.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8.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09.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11.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2.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14. 정선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정선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